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2831 판결 [보증채무금]

참 조 조 문

[1] 민법 제105조, 제428조, 제445조, 제686조 제2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2831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1. 8. 30 선고 2001나115 판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유AAAAAA니어링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BA)

【피고,상고인】 대한주CA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빛CB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양BB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 1. 8. 30. 선고 2001나1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1997. 6. 24. 주식회사 DA건설과 원고가 ○○시 ○○읍 ○○리 소재 ○○아파트 건축공사의 감리를 담당하기로 하는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1998. 5. 29. 건축공사 내용의 변경에 따라 감리기간을 연장하고 감리비를 증액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 DA건설이 1998. 6. 25. 원고에 대한 감리비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감리비에치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DA건설이 1999. 6. 1. 아파트 건축공사를 중단하자 원고는 1999. 6. 17. 감리업무를 중단하고 1999. 7. 6. 피고에게 감리비 보증금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피고는, DA건설과의 감리비에치보증계약 약관 제4조 제1항에서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조합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보증금 청구서에 첨부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이하 생략).", 제2항에서 "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청구를 해태함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면서, DA건설이 1997년 9월 이후 감리비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원고는 지체 없이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어야 하는데 원고가 그 통지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감리비는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약관의 취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사고 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고의 채권보전조치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으로 손해가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지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사고 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가 최초 보증사고 발생일 이후 발생한 감리보수에 대한 보증채무를 면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통지의무 해태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 면책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위 면책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는 원고가 DA건설의 감리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감리계약을 해지하는 등으로 그 손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과실만큼 피고의 책임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원고가 해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와 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책임이 감면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률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또한, 피고는 원고와 DA건설 사이의 감리비 지급약정은 공정율과 무관하게 기간별로 감리보수를 정한 약정이 아니므로 원고의 감리업무 수행기간에 따라 감리보수를 산정할 수 없고, 원고가 실제 감리업무에 지출한 비용과 공사의 진척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감리보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DA건설은 감리비 총액을 4억 8,000만 원으로 하되, 선급금을 115,900,000원, 1차 중도금 3,000만 원을 1998. 6. 5.에, 2차 내지 7차 중도금 각 4,770만 원을 그 후 3개월 간격으로 지급하고 잔금 4,790만 원을 사용검사 신청시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공사기간 및 규모가 당초 계약보다 감소되는 경우에도 감리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반면,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공사의 규모와 감리업무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감리기간과 감리대가를 조정하되 계약시의 기준금액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감리비는 민법 제686조 제2항 소정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기간으로 보수가 정해진 경우에는 감리계약이 도중에 종료된 경우라도 감리업무가 실제 수행되어 온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에 해당하는 약정 보수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4000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